

#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20. 8. 2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북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법률문제 및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회의 자문 등 법률사무 의뢰에 응한다.

1. 체육회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사항
2. 체육회 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고문변호사는 체육회 소관 업무에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개업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중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하여 체육회장이 위촉한다.

1. 체육회 소속 부서나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2.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충원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결원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위촉기간 중의 자문실적, 자문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⑦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체육회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

2. 체육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때

가. 법률자문

나. 내용증명우편 발송

다. 소송행위

라. 변호사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직무행위

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기타 사정변경으로 고문변호사 위촉 지속이 곤란한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체육회는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 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약을 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임박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공개모집방식에 복수의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1. 전년도 체육회 소송 수임 건수가 체육회 외부위임 총 소송 건수의 50% 이상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은 제외)

⑤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과거 소송수행 평가결과,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한다.

**제6조(자문료 및 보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고문료를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행정심판사건,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특례)** 체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문료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사건의 난이도, 체육회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대리인이 된 고문 변호사 포함)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체육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체육회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체육회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9조(협의)** 제2조에 따라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총무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받은 후에는 그 내용을 기획총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 체육회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법률자문 실적 및 소송 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2020. 08. 26.)**

**(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